



보건복지부

# 보건복지부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· 종료 안내(6월)

### 1. 관련

- 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(지자체용) 제13-3판 개정안내(중앙방역대책본부-6887호, 2023.5.26.)
- 나.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(4월) (보험급여과-1552호, 2023.3.29.)
- 다. 「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」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(보험급여과-1553호, 2023.3.29.)
- 라.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(2023.4.27.)

2.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다음과 같이 연장 · 종료하고자 하니,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수가명	적용기간
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	별도 안내 예정
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, 대면진료관리료, 대면투약관리료, 투약안전관리료,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	<b>감염병 등급 조정 전까지 적용</b> * 시점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발표에 따르며, 구체적인 일자는 추후 안내
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	<b>2023.7.1. 0시부터 종료</b>
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, 한시적 비대면진료 수가, 감염병전담요양·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, 생활치료센터(재택치료 전용 포함) 관련 수가, 개방형 외래진료센터 수가,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, 선별진료소 응급의료수가	<b>2023.6.1. 0시부터 종료</b>

붙임 :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, 종료 안내(6월) 1부. 끝.

# 보건복지부장관



수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의료기관정책과장, 정신건강정책과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치과의사협회장, 대한한한의사협회장, 대한치과병원협회장, 대한한방병원협회장, 대한요양병원협회장, 대한약사회장, 대한간호협회장, 제주특별자치도지사, 세종특별자치시장, 서울특별시시장, 부산광역시시장, 대구광역시시장, 인천광역시시장, 광주광역시시장, 대전광역시시장, 울산광역시시장, 경기도지사, 강원도지사, 충청북도지사, 충청남도지사, 전라북도지사, 전라남도지사, 경상남도지사, 경상북도지사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
주무관 송서현 보건사무관 조영대 보험급여과장 전결 05/26 정성훈

협조자 행정사무관 박소영

시행 보험급여과-2539 2023.05.26. 접수  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보건복지부 / shsong98@korea.kr  
전화 044-202-2737 전송 044-202-3934 / shsong98@korea.kr / 공개  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